#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3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복기왕·주철현·오세희

김남근 • 권향엽 • 김 윤

김동아・황정아・김기표

황운하 • 이훈기 • 한창민

양부남 • 박수현 • 백승아

강준현 · 김 현 · 박희승

이재관 · 김영배 · 송재봉

이재강 • 채현일 • 정준호

안태준 · 김영환 · 서영교

전재수 · 김선민 · 용혜인

박홍배 · 이해식 · 박정현

조 국 • 한병도 • 이상식

신정훈 • 위성곤 • 정춘생

이광희 · 모경종 · 김성회

윤종군 · 강훈식 의원

(4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천여 건에 불과하고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7천여 건에 이름.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 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화해조치와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 기록 및 사료 관리, 피해자 및 유족 보호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관련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으나 재단이 건립되지 않아 2기 진실화해위원회출범의 계기가 되었음. 이에,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진실화해재단이 건립되도록 명문화함.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인과 유족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규명 활동 임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이에 관한 법령상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필요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모 • 위령사

업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 2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고 한다)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

- 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관련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 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

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43조의3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의 진실규명 또는 제36조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0조의 제목 중 "과거사연구"를 "진실화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거사연구"를 "진실화해"로,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제25조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3(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제23조의2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3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
	여 제22조에 따른 조사개시사
	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
	한 "희생자의 유해"라고 한다)
	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u>수 있다.</u>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
	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
	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
	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u>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u>
	<u>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u>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u>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u>
	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 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 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23조제5 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 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u>따라 전사자유해를</u> 조사·발굴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 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 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 묘에 관련자의 유해가 매장되 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 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 치한다.
-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 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 송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위원회가 지 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 전 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 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 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 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 •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 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 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43조 의3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 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기간) ①	-
	-
	<u>.</u>
<u>년간</u> .	
②	-
	-
	-

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 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u>1년</u> 이 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저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0조(<u>과거사연구</u>재단 설립) ① 저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u>과거</u> 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신 설></u>

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

작물 • 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 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희생 자의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 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